

2026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중소기업이 자율 기획한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의 공급망 ESG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ESG 규제 및 정부 정책 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 ESG 활동 지원
 - 정부지원금과 상생협력기금을 매칭하여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활동에 소요되는 과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2월 26일 ~ 12월 31일까지

□ 사업규모

- 30억원 (정부지원금 15억원, 상생협력기금 15억원)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평가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 및 최종보고 • 기금조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집행 • 성과관리
출연기업 (대기업 등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기금 출연 • 과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원 과제 수행
수혜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과제 수행 	
수행기관 (컨설팅 기관 등 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과제 수행 • 사업 집행 및 정산 • 과제활동 내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 추진절차



2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ESG 활동을 지원유형 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율 과제 형식으로 지원

지원유형

유형	세부 지원 항목
환경(E) 지원	① 탄소감축 지원 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증 지원
사회(S) 지원	③ 산업안전 지원 ④ 인권윤리 지원
실사 지원	⑤ ESG 이니셔티브 대응 지원 ⑥ 고객사 구매정책 대응 지원
공시·인증 지원	⑦ ESG 정보공시 지원 ⑧ ESG 인증 지원

지원 세부내용

【 환경(E) 지원 】

-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NDC)에 따른 탄소 감축 컨설팅 및 시설지원
- 환경정보 공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제3자 검증 지원

- (탄소감축 지원) 협력사 사업장 공정진단, 사업장별 탄소배출 감축 방안 도출 및 공정개선 실행

<공급망 탄소 감축 지원 절차>

구분	사전 진단	공정 진단	개선 실행	성과분석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 공정개선 방향 및 방법론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설비별 현장 정밀진단 □ 배출원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교체 등 개선안 현장 적용 □ 점검 등 이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저감량, ROI 등 효과 산정 □ 사후관리 등 후속지원 방안 제시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증 지원) 탄소 관리 교육, 인벤토리 구축 조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공급망 온실가스 측정증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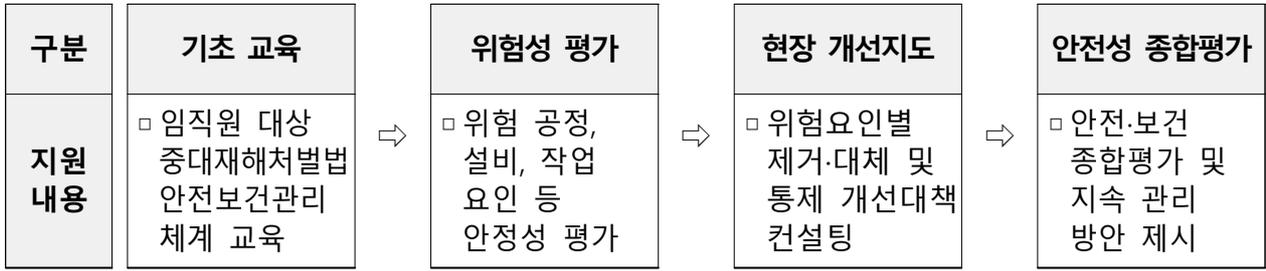
구분	탄소관리 기초교육	인벤토리 구축 현장조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원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실시

【 사회(S) 지원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 체계구축 및 시설지원
- 인권·노동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사 대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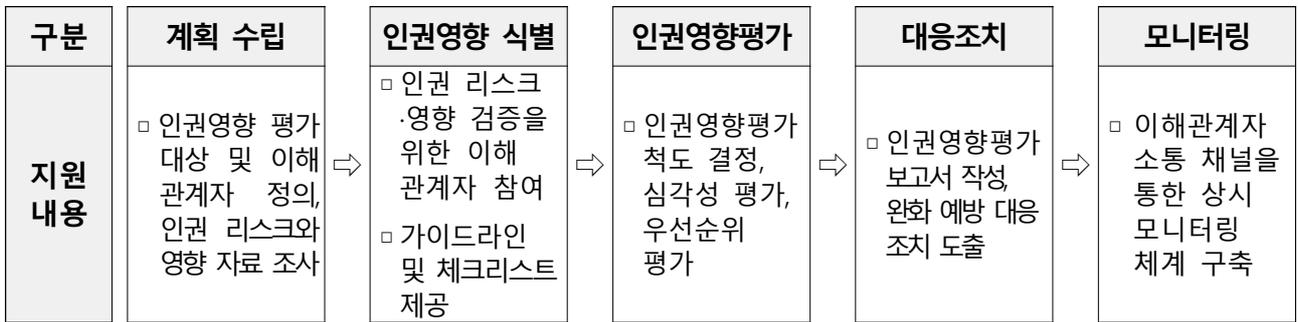
- (산업안전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임직원 교육, 위험성 평가, 현장 개선지도, 안전성 평가 지원

<공급망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절차>



□ (인권 윤리 지원) 인권 경영 리스크를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하기 인권 경영체계 구축 지원

<인권실사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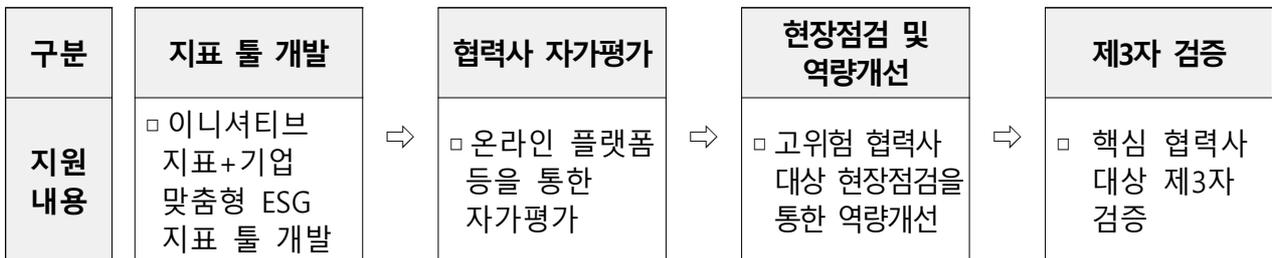


【 실사 지원 】

□ 주요 해외 ESG 규제 및 공급망 거래사 ESG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ESG 실사 대응 과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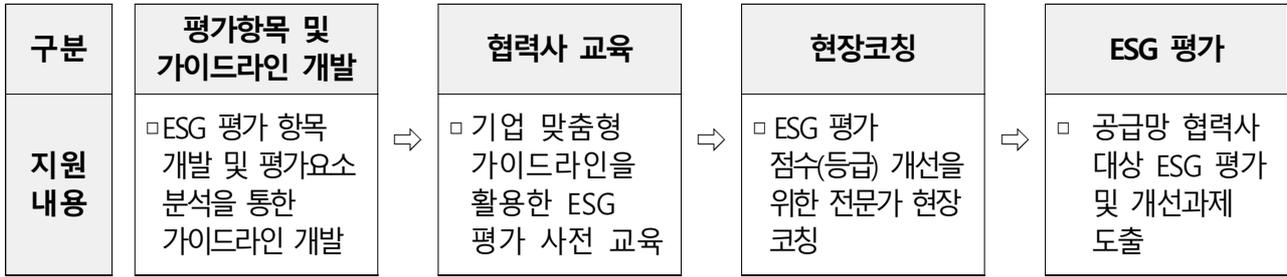
□ (글로벌 ESG 지표 대응) RBA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자가평가, 현장점검, 제3자 검증 지원

<업종별 공급망 ESG 이니셔티브 지원 절차>



□ (공급망 고객사 구매정책 대응 지원) 신규기업 선정 및 거래 협력사 평가 시 ESG 평가 항목 교육, 평가, 개선 활동 지원

<공급망 ESG 평가 대응 지원 절차>



【 공시 · 인증지원 】

- 중소기업의 자발적 ESG 정보공시를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거래처 대응을 위한 ISO, EcoVadis 등 ESG 인증지원

- (ESG 정보공시 지원) 협력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중소기업 환경정보공개 제도 참여 등 지원

<공급망 ESG역량 강화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세부내용	비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중소기업 맞춤형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지원	ESG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환경정보공개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라 공개항목 작성 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제도 연계

- (ESG 인증) ISO 인증, 환경특화 컨설팅, 자율제안 과제 등 공급망 ESG 역량 강화 지원

<공급망 ESG역량 강화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세부내용	비고
ISO 인증	ISO 26000(사회적책임 국제표준),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ISO 37001(부패경영방지시스템)	-
자율 제안과제	공급망 ESG 관리 체계구축, 협력사 ESG 인식제고 교육 등 공급망 내 필요한 ESG 지원 제안과제 지원	-

정부보조금 지원

- (매칭 비율) 정부지원금 50% : 상생협력기금 50%
 - 상생협력기금은 50% 이상 분담 가능
- (지원 한도) 과제 당 정부지원금 최대 2.5억원 이내
 - ①탄소감축 지원, ③산업안전 지원유형 중 설비지원의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지원

3 모집 대상

□ 신청기업(출연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 법인
 - 신청기업은 과제신청서에 수혜기업과 수행기관을 선정·표기하여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1.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과제 신청서(별첨1)
2.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첨2) - 10P 이내
3. 특수관계인 및 중복참여 확인서(별첨3)
4. 수행기관 청렴·보안서약서(별첨4)
5.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신용평가사 발행)

□ 수행기관 요건

-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가 아닌 법인
- 과제와 연관된 전문인력 및 수행 이력 보유한 법인
 - * 수행 이력이 없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제수행 역량 제시

4 지원 대상(수혜기업)

□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따른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 서류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1.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3.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가 아닌 기업

5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전요건 확인 → 선정평가 → 결과 통보

* ESG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평가 진행하며, 70점 이상 과제 중 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예산 내에서 선정

* 중도 포기 과제 발생 시 차순위 과제 지원

< 선정평가 세부 항목 >

항목	내용
지원 필요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ESG 규제 대응 필요성 - 과제가 CSDDD, CBAM 등 주요 국제 규제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포함 여부 □ 공급망 내 ESG 애로사항 해결의 시급성 - 공급망 ESG 문제가 비즈니스 경영에 중대하고 시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여부 □ 주요 수출업종 및 ESG 요구 산업 연관성 - 주요 수출업종 또는 ESG 요구가 높은 산업군에 속하는지 여부
추진 계획 적정성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ESG 진단, 개선 활동, 인증 취득 등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 과제 수행 방식이 명확하고 현실적인지 여부 □ 협력사 맞춤형 접근성 - 협력사의 업종 및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ESG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 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적절성 - 협력사 지원방안, 인력, 경영방침, 자사ESG연계 등 과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사업의 주요 단계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정으로 배분되었는지 여부
예산 계획 적정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신청기업 부담금과 정부지원금 간 예산계획이 적정하게 분배되었는지 여부 - 사업비 편성 및 정부지원금 활용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수행기관 역량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의 과제추진 역량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 인력 규모 및 운용계획 보유 - 신청 과제와 유사한 과제 수행 실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과제 성과를 내기 위한 적절한 특징점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기대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ESG 개선 활동이 수출 및 국제 거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ESG 경쟁력 및 거래 유지 효과 - 과제를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이 향상되고, 대중견기업과의 거래 지속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가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원아너스 선정 실적 (2점) □ 탄소저감^{지원유형1} 또는 산업안전^{지원유형3} 과제(최대 1점)

6 신청 및 접수

□ 신청 · 접수기간

- (기 간) 2026년 2월 26일(목) 09:00 ~ 3월 26일(목) 18:00
- (방 법) 이메일 접수 esg@win-win.or.kr

7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지원부
(02-368-8469 / esg@win-win.or.kr)

8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출연기업) 책임으로 함
- 과제수행 시 부실 · 허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재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별첨 1.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 신청서
2.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10P 이내로 작성
3. 특수관계인 및 중복참여 확인서
4. 수행기관 청렴·보안서약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원사업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선정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